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728호

「주택법」 제37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제2조제7호”를 “제2조제10호”로 하고, “법 제16조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법 제16조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있다.

제20조(이행여부의 확인) ① 감리
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
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
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
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
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
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이행여부의 확인) ① -----

----- 법 제49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